2021. 6. 14.(월)

# 코로나19 대용 전남형 사회적거리두기 연장

〈재난안전대책본부〉





## 전남형 사회적거리두기 연장

전남 도내 코로나19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백신접종 실적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'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' 일부수칙을 완화하여 3주간 연장

#### □ 개 요

- (적용기간) '21. 6. 14.(월) ~ 7. 4.(일) / 3주
- (적용단계)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+ <mark>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</mark>
  - ※ 전국: 수도권(2단계) + 비수도권(1.5단계) 전남, 경북, 경남, 강원 개편안 시범적용

#### □ 변경된 방역조치

- (사적모임) 6인까지 허용 ➡ 8인까지 허용
  - ※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 등은 4명까지 제한 유지
- (종교시설) 수용인원의 30% ⇒ 50%, 접종 완료자 식사 가능(6.14.~)
  - ※ 접종완료자 수용인원 제외·성가대·소모임 운영 (7.1.~)
- (방역강화) 방역관리 시설 방역조치 및 현장점검 강화
  - 학교 기숙사, 기업 구내식당·샤워장 등 취약시설 현장점검 강화
  -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방역조치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점검
  - 휴가철 주용관광지 고위험 시설 방역대책 및 현장점검 강화
  - ※ 예방접종완료자의 경로당 식사 가능 여부는 자체 검토 후 추후 안내

#### □ 우리군 조치계획

- O '전남형 사회적거리두기' 방역수칙 홍보
- O 방역관리 시설 현장점검 강화 및 위반 시 무관용 조치

#### 붙임1

###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['21. 6. 14. ~ 7. 4.]

#### 《완화 불가한 조치》

- ▶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(유흥시설(유흥주점,단란주점,감성주점,헌팅포차), 콜라텍, 무도장, 홀덤펍, 노래연습장)
- ▶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(기타 시설)

#### ※ 적서 볼드체(밑줄)로 작성된 부분은 개편안 1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+방역수칙 조정)	
① 모임·행사		
사적 모임	▶ 9 <u>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</u> - <mark>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</mark> *1차 접종자 : 직계가족 인원제한 제외(6.1.~) *접종완료자 :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(7.1~)	
기타 모임·행사	<ul> <li>▶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</li> <li>▶ 집회·시위의 경우 300명 미만</li> <li>▶ (권고) 공공기관 주최 행사 100인 미만</li> <li>▶ (신고·협의) 300명 이상의 모임·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·협의 승인</li> </ul>	
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		
공통수칙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방역관리자 지정 등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	
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랍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치)	<ul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</li> <li>▶ 시설 면적 6m²당 1명</li> <li>* 클럽, 나이트는 8m²당 1명</li> <li>▶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</li> <li>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</li> </ul>	
콜리텍무도장	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▶ <mark>시설 면적 8㎡당</mark> 1명 인원 제한 ▶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▶ 음식 섭취, 소리지르기 등 비말 발생행위 금지	
홀덤펍	►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► <mark>시설 면적 6m²당</mark> 1명 인원 제한 ►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►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손소독 또는 장갑착용	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▶ <u>시설 면적 6㎡당</u>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<mark>출입자명부 작성관리</mark>	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+방역수칙 조정)
	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(코인)연습장	<ul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</li> <li>▶ 시설 면적 6m²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-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이용자(손님)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)</li> </ul>
실내 스탠딩공연장	▶ 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
식당·카페 (무인카페 포함)	<ul> <li>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</li> <li>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</li> <li>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li> </ul>
파티룸	▶ <u>시설 면적 6m²당 1명 인원 제한</u>
실내체육시설 (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)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<mark>시설 면적 6㎡당</mark> 1명 인원 제한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 직업훈련기관	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결혼식장	▶시설 면적 4m'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
장례식장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
돌잔치전문점	▶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
목욕장업	▶ <u>시설 면적 6m²당</u>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영화관	▶출입자 명부 작성(온라인예매자는 제외) ▶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공연장	▶출입자 명부 작성(온라인예매자는 제외) ▶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	▶ 마스크 상시 착용 ▶ 음식 섭취 금지('ㄷ'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칸막이의 경우 30cm 이상 설치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 <mark>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</mark> +방역수칙 조정)		
오락실·멀티방 등	▶ <mark>시설 면적 6m²당</mark>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	
독서실·스터디카페	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)		
놀이공원·워터파크	▶줄 설 때 사람 간 1m 거리두기 ▶샤워실 한 칸 띄워 사용		
이·미용업	▶ <mark>시설면적 6㎡당</mark>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		
백화점·대형마트	▶ <mark>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</mark> 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		
마트·상점 (300㎡ 이상)	<ul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주기적 환기·소독</li> <li>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유지, 밀집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 판매로 분산</li> </ul>		
③ 기타 다중이용시설			
숙박시설	<ul> <li>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(직계가족 제외)</li> <li>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</li> <li>안내문 게시</li> </ul>		
전시회장·박람회장	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<mark>줄 설 때 사람 간 1m 거리두기</mark>		
국제회의장	▶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<mark>발언자 테이블 칸 막이, 사전등록제 운영</mark>		
국공립시설	▶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등 <u>50%</u> 이내로 인원 제한		
사회복지이용시설	▶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		
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		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▶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		
교통시설 이용	▶ 마스크 착용		
스포츠 관람	<ul> <li>▶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</li> <li>▶ 지정장소 외 음식 섭취 금지</li> <li>▶ 함성·응원 금지</li> <li>▶ (실내) 50% 이내로 관중 입장, 좌석 한 칸 띄기</li> <li>▶ (실외) 50% 이내로 관중 입장, 좌석 한 칸 띄기</li> </ul>		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+방역수칙 조정)
등교	▶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
종교활동	►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<u>좌석 수 50%</u> 이내 인원 참여 ►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 행사 금지 *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식사 허용